

「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관할관청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소진 예상에 따라 번호 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번호판 규격 신설

-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대역 확대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·나·다·라·마·바·사·아·자·차·카·타·파·하·거·너·더·러·머·버·서·어·저·처·커·터·피·허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) ① (생 략)</p> <p>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·나·다 ·라·마·바·사·아·자·차·카 ·타·파·<u>하</u>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 시한다.</p>	<p>제5조(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하·거·너·더·러·머·</u> <u>버·서·어·저·처·커·터·퍼·</u> <u>허</u>-----.</p>